

제244회 임시회
2005. 10. 20(목)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.
- 2005년 10월 7일 이기동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, 「**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**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동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 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 제2항에 의거 지역응급의료 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
-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 -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의 구성, 자격요건 및 임명·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정하였으며
 -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하였고
 - 위원장의 직무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사항을 안 제4조에,
 - 간사 및 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,

- 위원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.
-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2항에 의거 지역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
- 지난, 2002. 3. 25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이후의 충청북도 응급의료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지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이상으로 「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